

#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제3437호
----------	--------

제출년월일 2024. 2. 23.  
제출자 유매희 의원  
배강민 의원

## 1. 심사경과

-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유매희 의원, 배강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속하게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 다. 적용범위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제6조)
- 라.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7조)
- 마. 실태조사 등 및 지원사업 (안 제8조 ~ 제9조)
- 바.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및 사무 위탁 (안 제10조 ~ 제11조)
- 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안 제12조 ~ 제14조)
- 아. 포상 및 시행규칙 (안 제15조 ~ 제16조)

##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현시대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생활 단위인 1인 가구에 대해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이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형식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